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68
----------	-------

발의연월일 : 2026. 6. 10.

발 의 자 : 이훈기 · 김 윤 · 김현정
이해민 · 전진숙 · 곽상언
황운하 · 양부남 · 김남근
민병덕 · 이인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종류·구성·권한·심의절차 및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공무원 징계는 공무원에게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을 수반하는 절차일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내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확정하고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임. 특히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사실관계 판단, 피해자 진술의 특성, 조직 내 권력관계, 2차 피해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요구되므로 징계위원회의 구성 단계에서부터 전문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공무원 징계령」은 중앙징계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

회의 구성, 민간위원 자격, 회의 구성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도, 성희롱·성폭력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원이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는 없음.

반면 인사혁신처 내규인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결정을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포함하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판단에는 일반적인 인사·감사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임.

그럼에도 실제 징계처분을 의결하는 공무원 징계위원회 구성에서는 성희롱·성폭력 분야 전문가 참여가 법률상 보장되어 있지 않아, 사건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큼.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포함되더라도 해당 위원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구조, 피해자 보호 원칙, 2차 피해 방지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정하고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징계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에 관한 핵심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징계절차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에 성희롱·성폭력 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려는 것임.

아울러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을 징계 사유로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성희롱·성폭력 등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과반수를 초과하

여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의 성비위 관련 징계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1조 등).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종류·구성·권한”을 “권한”으로, “진술권”을 “진술권 등”으로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공무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 중 국무총리가 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등급 중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

2. 제1호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③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성희롱·성폭력 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 ⑤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 ⑥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초과하여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제81조의3(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의 다음 순위인 사람(직급을 기준으로 정하되, 같은 직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이 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③ 보통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④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

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소속기관(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성희롱·성폭력 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4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⑥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초과하여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와 제8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u><신설></u> ② 징계위원회의 <u>종류·구성·권한·심의절차</u> 및 징계 대상자의 <u>진술권</u>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③ (생략) <u><신설></u>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③ -----<u>권한</u>----- ----- -----<u>진술권</u> 등-----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81조의2(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공무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 중 국무총리가 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등급 중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

2. 제1호에 상당하는 특정직공
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③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
도록 해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
0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
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서 중앙징계위원
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
는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
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성희롱·성폭력 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

④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⑤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⑥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초과하여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신 설>

제81조의3(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의 다음 순위인 사람(직급을 기준으로 정하되, 같은 직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이 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③ 보통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④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소속기관(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
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
한다]

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
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성희롱·성폭력 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

⑤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
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4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⑥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
건이 속한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
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
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
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

	<u>4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초과하여 포함되어야 한다.</u> 1. 「<u>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u>」 제2조에 따른 <u>성폭력범죄</u> 2. 「<u>양성평등기본법</u>」 제3조제 <u>2호에 따른 성희롱</u>
--	---